[서식 예]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



									*
	행	정	심	판	청		구		
ت اد	인	이 름	0	00	주민등록	루번호	111	111-11	11111
청 구	인	주 소	0 ()시 O ()구 00	길 0	0		
선정대표자 또 는 대									
피 청	구 인	00지	방경칠	· 남청장	재 결	청		경 찰 청	! 장
청구대상인 (부작위의 전 신 청 내 용	체가 되는	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							
처분 있음을	을 안 날	20 00. 0. 0.							
심판청구취	지 이유	(별지 기재와 같음)							
처분청의 3	고지유무	있	<u> </u>	<u>)</u>	고지ι	게 용	자동기	나운전면]허정지
증 거 <i>-</i> (증 거		(별지 기재와 같음)							
근 거	법 조	행정심	판법	제19조,	동법시행	령 제	18조		
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. 20○○년 ○월 ○일									
위 청구인 ㅇ ㅇ (인)									
0 0	지 방	경 찰 	청	장	귀	하 			
첨부서류	청구서부	본				수 수	를 료	없	<u>0</u>

심판청구취지



피청구인이 20○○. ○. ○.자로 음주운전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 전면허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라는 재결을 구합니다.

심 판 청 구 이 유

- 1. 청구인은 1900.경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해오다가 1900. 0. ○. ○○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으로 생계를 이 어가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.
- 2. 청구인은 2000. 0. 0.경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당시 예식장 주차장에 공간이 없어 골목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안쪽에 있던 차량의 소유자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골목 길이고 약간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약 7미터정도 운전하여 차를 빼주게 되었 는데 그때 마침 골목 바깥을 지나던 승용차와 접촉하게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고 전혀 운행을 하기 위한 운전이 아니었습니다.
- 3.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주차중인 차를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비켜주는 과정이었지 결코 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이 아니었으며, 평생 운전으로 생계 를 유지해오고 있어 ○○○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장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바. 청구인이 음주하게 된 동기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으 로부터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므로 20○○. ○. ○. 정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 증 방 법

1	소갑	저	1호증
1.	\perp H	_ ^ \I	1150

1. 소갑 제2호증

1. 소갑 제3호증

1. 소갑 제4호증

1. 소갑 제5호증

자동차운전면허취소 통지서

청첩장

주민등록등본

진술서(본인)

사실확인서(결혼식 혼주)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심판청구서부본

1통

6	순계 대한법률구조공단
4	
- S	♣ 1 대한법로구조공단
(왕	
] }	

제출기관	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(행정심판법 23조)	청구기간	·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(왕) ·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· 성정심판법 27조)			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			
제출부수	청구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행정심판법			
불 복 방 법	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(행정심판법 51조)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. 다만,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・재결에 대한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19조, 38조)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・다만,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(행정소송법 18조) 					